

2026년 수입과일 할당관세물량 배정 연장공고

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
2026년 수입과일 할당관세물량 배정계획을 공고합니다.

1. 수입과일 할당관세 배정 한도 및 배정기준

☐ 선착순 배정(물량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)

품목	세부	HS코드	배분계서번호	물량(톤)	세율	이행기한 (수입신고기준)
바나나	신선	0803.90.0000	ETC-20260212-16-0001	129,000	5%	(당초) 2026.6.30. ↓ (연장) 2026.8.15 (수입신고 기준)
파인애플	신선	0804.30.0000	ETC-20260212-98-0003	33,500		
망고	신선	0804.50.2000	ETC-20260212-99-0002	18,500		

* 바나나의 경우, 이행기간 중 **시장가격 급등 시**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 제고를 위해 공고 시점(7.1)
잔여 한계수량의 20%이하로 소진될 경우, 수입업체-대형유통업체 직공급용에 우선하여 배정

2. 할당관세물량 배정 · 추천 신청기간

- ☐ 배정 신청기간 : 2.12.(목) 14:00 ~ 8.10.(월) 18:00
☐ 추천 신청기간 : 2.12.(목) 14:00 ~ 8.12.(수) 18:00

3. 배정기준

☐ 업체당 최대 배정한도 내에서 선착순 배정

품목	세부	HS코드	업체당 최대 배정한도(톤)	비 고
바나나	신선	0803.90.0000	45,150	전체물량의 35%*
파인애플	신선	0804.30.0000	8,375	전체물량의 25%
망고	신선	0804.50.2000	2,775	전체물량의 15%

* 업체별 배정한도 소진 속도에 따라 바나나 최대한도는 변동되었으며, 물량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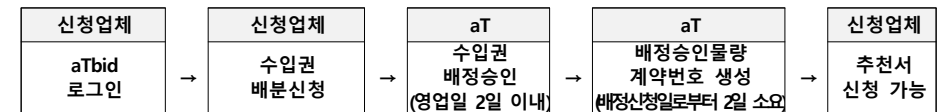
4. 신청자격

- (1) 하기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
- 관할 기관에 영업의 종류를 **수입식품 등 수입 · 판매업** 또는 **식품제조 · 가공업**으로 신고한 자
 - **농산물 도 · 소매업**으로 **사업자등록한 자**(식자재업체, 대형마트 등)

- (2) 신청업체의 대표자, 주소지, 전화번호 중 1개 이상 중복 시 **허위 · 부정신청**으로 간주하고 해당업체 중 1개소만 배분하며, 허위 · 부정신청이 입증될 경우 기존 추천서를 취소하고 배정된 물량을 환수할 수 있음
- (3)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동일품목 할당관세 배정물량의 95%이상을 이행하지 못한 자는 신청이 불가하며, **‘25년 할당관세 이행결과 설문조사 미참여 업체는 설문조사 우선 참여 후 배정신청 가능**(미참여 시 배정신청 불가)

5. 신청방법

☐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(www.atbid.co.kr) 통한 온라인 접수



* 관세청 UNI-PASS상 입찰적합목록 제출 확인된 B/L 및 수수료 납부 확인된 건에 한하여 발급가능

** 배분승인 및 추천승인 과정에는 각각 최대 2일(영업일 기준) 소요

6. 배정신청 제출서류 목록

구분	제출서류 목록
필수	(1) 할당관세 적용 배정신청서(별지 제 1호)
	(2)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(26.2.11 이후 발급분에 한함)
	(3) 영업신고(허가·등록) 사본 1부 * 영업의 종류 :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또는 식품 제조·가공업, 농산물 도·소매업
	(4) 선적서류(선하증권(B/L), 산업송장, 포장명세서) 사본 각 1부 * 신청 물량은 순중량(Net weight) 기준으로 작성 필수
	(5) 할당관세 적용 계획서(별지 제 9호) 1부
	(6) 기업(개인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별지 제10호 서식)
	(7) 할당관세 배정물량 이행각서(별지 제 12호 서식)
	(8) (대형유통업체 직공급 우선배정사) 납품물량 확인 증빙 (인수증,인수확인, 거래명세서 등)
선택	수입대행계약서 또는 B/L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(해당업체의 경우에 한함)
의무	(9)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정보 제공 온라인 동의 * 온라인 동의 방법은 <참고4> 확인, 단, 기존에 동의한 업체는 제외

* 배정신청과 추천신청의 선적서류가 상이한 경우 배정 취소될수 있음

* (2)~(3) 서류는 당해연도 최초 1회 제출로 같음 가능하나,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 요

* (1),(5),(6),(7) 서류는 atbid 사이트 내 배정신청 제출 내용으로 같음 가능

7. 배정업체의 의무 및 제재사항

- ☐ 이행기한(2026.8.15) 내 수입신고(수입신고필증상)를 완료해야 함
 - 농식품부 요령 공고 제9조(추천물품의 신속통관)에 따라 추천물량은 신속하게 수입·통관하고,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함
- ☐ 수입이행결과 보고서(26년 신설)를 이행기한 종료 후 14일 이내 전자입찰시스템(www.atbid.co.kr)을 통해 제출해야 함
 - 할당관세 수입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시 자가 점검을 통해 이행실적이 상이한 경우 이행실적 수정을 aT에 요청하여 정정해야 하며, 공사가 이행실적 확인을 위해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할 시, 전자입찰 시스템(www.atbid.co.kr)을 통해 제출 필요

◆ **필독 (할당관세 사후관리 강화 공지)** 특정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하여 정책효과를 낮추는 악덕 수입업체 근절(대통령 지시사항)을 위해 공사에서는 '26년부터 시행되는 할당관세 물량에 대해 판매실적을 징구하는 수입이행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, 기한 내 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 대상 차년도까지 배정제한 조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 운영하오니, 향후 공사 소관 할당관세 물량배정을 신청하는 수입업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관련 : 할당관세 수입관리 및 추천 세부요령('26.2.11개정))

* 관련 : 농식품부 공고 제10조(보고) 및 공사 세부요령 제6조(보고 및 조사 등)

- ☐ 배정받은 물량의 95% 이상*을 도입·판매하지 않거나,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및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, 제재 통보일로부터 차년도까지 할당관세 배정 대상에서 제외
 - * 단, 이행을 산정 시 이행기한 종료 3일전(8.12)까지 반납한 물량은 배정물량에서 제외함
- ☐ 대형 유통업체 직공급용 추천물량은 사후 대형유통업체 공급실적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, 허위·부정 등 입증 시 미인정된 추천물량에 대하여는 추천취소(할당관세 미적용) 등 제재조치 계획임
- ☐ 「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준수해야 함

8. 기타

- 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요령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에 따름
- ☐ 문의처

담당자명		연락처	전자우편(이메일)	담당부서
직급	성명			
사원	손아영	061-931-0919	fruits@at.or.kr	기후변화대응처 수급대응부
사원	박재형	061-931-0923		

2026. 7. 01.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